

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변리사 신 응 조
NAM&NAM
국제특허법률사무소

I. 들어가며

특허출원을 한 자(출원인)가 자신의 출원발명을 등록받 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5~18 개월 이 경과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명 대상 물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의 발명의 경우, 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조 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전술한 15~18개월의 심사 기간은 미국, 유럽 등의 다른 나라의 심사기간보다 상당 히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에게는 상당히 긴 기 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는 규정된 우선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른 특허출 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심 사신청대상은 기술 발전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수차례 개 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청고시 제2010-9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

한 고시”(이하, “우선심사고시”라 함)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심사신청대상, 우선심사신청 절차 및 우선심사결정 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¹⁾

II. 우선심사 신청대상

우선심사신청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이 있는 후에 누 구든지(즉,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다.²⁾ 구체적으로 우선심사고 시 제4조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을 4가지 카테고리로 분 류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대상 1 : 출원공개 후 제3자 무단실시)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도,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1은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통

1)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도 우선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특허출원에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출원의 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특허청 사이트(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4&catmenu=m02_02_04)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다만,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 한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허법 제59조 제1항), 심사청구가 전제된 후에(즉, 심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우선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우선심사신청대상에 대하여는 속성상 후술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우선심사고시 제3조), 후술할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 대상 또는 시기의 제한이 있다.

해 조속히 특허권을 획득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대상 2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대상 2에서는 기술 경향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대상들을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

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출원된 발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개정 2008. 9. 30>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 (3) 「에너지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7)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³⁾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으로 본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⁴⁾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2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대상에서 주의할 점은 전술한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⁵⁾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외국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대상 3 :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대상 3은 특허심사업무의 국가간 공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우선심사신청대상으로서 외국에 최초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기초하여 한국에 동일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외국 특허청에서 동일발명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증빙

3) 즉,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에, 한국특허출원에 기초해서 외국에 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한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발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 복잡성을 가지는 대상(고안)에 대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침해가 용이하거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간단한 장치류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많이 출원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대상에 한하여(즉, 특허출원 발명은 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없음), 보다 용이하게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대상이다.
 5)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 또는 다른 특허검색 DB들(예를 들어,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http://www.kipris.or.kr/kor/guide/search_guide/guide_primary.jsp)을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특허법률사무소나 전문검색업체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결과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를 제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 3은 주로 외국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한국에도 출원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 특허청과 우선심사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들에 대하여는 반대로 한국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해당 외국에 출원하면서 해당 국가가 규정하는 심사촉진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된 국가들은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이며 추후 다른 국가의 특허청과의 합의에 따라 대상국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⁶⁾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대상 4: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대상 4는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식회사 위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주)아이피솔루션)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대상 4는 전문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심사업무를 경감해주는 대신에 특허출원된 발명이 전술한 대상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빠른 심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주체인 특허청뿐만 아니라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대상 4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대상을 불문하기 때문에,

특허출원된 발명의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해야하는 소정의 조사료를 감수한다면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사료되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발명이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에서 소요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우선심사 신청절차

1. 우선심사의 신청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해당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신청료는 매 건당 20만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8호)으로서, 매건당 13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4만원씩 가산되는 심사청구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심사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대상에 대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대상별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6) 현재 대상 3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은 대상 국가들에 대하여 동일발명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일본에 대하여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 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도 신청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신청 이유		증빙 서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상대국 특표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2.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우선심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서는 접수 대상이 되는 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한다. 특허청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심사결과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할 기회를 주게 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우선심사 신청자는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등의 미비를 보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완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는 당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하며 이 경우 해당 출원은 원래의 심사청구순에 따라 특허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접수 대상이 되는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IV. 우선심사신청의 효과

1. 우선심사의 착수 및 소요기간

우선심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심사신청후 우선심사결정여부를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대략 1월 내외)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대략 3~4개월 내에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심사청구된 건들에 대한 심사기간이 대략 15~18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은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초고속 심사(녹색기술 우선심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우선심사신청이 이루어진 특허출원은 전술한 통상적인 우선심사보다도 더 빠른 기간(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선심사지침서 20쪽).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 우선심사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일 것
- (2) 우선심사고시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출원(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일 것
- (3)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즉,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면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하였고, 그러한 취지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술한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V. 마치며

현행 특허제도하에서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략 1년반 정도의 심사기간을 기다린 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권리화 또는 조속한 심사 결과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에게는 시간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술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우선심사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심사청구된 출원들이 오히려 더 늦게 심사결과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대상 및 요건을 규정하여 선별된 특허출원들만이 다른 특허출원들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자신의 특허출원된 발명을 보다 빠르게 권리화하거나 심사받기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임병웅,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9.04.11.
2. 현종철, OVA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2.03.15.
3. (특허청 고시 제2010-9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010.04.28.
4. (훈령 제665호)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010.04.28.
5. 우선심사지침서, 2009.12.